

일본 민간경비원 검정제도 연구를 통한 한국 민간경비산업 전문화 방안

이 치 영*

〈요 약〉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공급과 효과적 예방을 위한 민간영역의 활용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시사점을 한국 민간경비산업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확히 구분된 경비업무의 분야와 범위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준에 따른 민간경비 검정자격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한 복합적 평가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학과·실기과목의 연계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를 두어 자격취득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정합격자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가시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6가지의 시사점에 대하여 한국 민간경비 검정제도의 도입 시 민간경비업 구분의 불명확함, 교육훈련체계 미비로 인한 검정을 위한 과목구성과 체계 부족, 검정과목과 업무 관련성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전문화된 안전전문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고객의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 민간경비, 민간경비 검정제도, 민간경비 자격제도, 경비원 자격증

*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호학과 박사과정

목 차

- | |
|---|
| <p style="margin: 0;">I. 서 론</p> <p style="margin: 0;">II.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이론적 논의</p> <p style="margin: 0;">III.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p> <p style="margin: 0;">IV. 일본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시사점과 한국 민간경비 전문화 방안</p> <p style="margin: 0;">V. 결 론</p> |
|---|

I. 서 론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테러, 해킹, 기술 및 영업비밀유출, 탈취 등 점차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 난민, 집회시위 등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인한 갈등과 지진, 화재, 붕괴사고 등 인위적·자연적 재난 등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안전서비스 주체는 민간경비산업을 중심으로 1976년 「용역경비업법」의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80년대 아시안 게임과 서울올림픽을 통해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을 거쳐 경비산업의 안정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1995년 경비지도사 제도를 도입을 통해 경비업체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업체의 교육, 감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수준향상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 민간경비원은 단순노무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으며(박성수, 2017:107), 낮은 처우와 임금, 사회적 인식, 최저입찰제 등 사회적, 구조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와 논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경호·경비업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경비자격증제도는 현

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박준석·홍준혁, 2006:123), 일본역시 민간경비의 양적인 성장 이후 「경비업법」을 제정하고, 민간경비원의 민간경비의 전문성,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비업체에 속한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교육·지도·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역사적, 제도적으로 한국의 경비업과 동일한 문제를 겪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경비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과 전문분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국 경비업과 유사한 일본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별 자격검정제도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로 대표되는 교육훈련제도는 여러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조용철, 김순석, 2008:133).

기존의 민간경비 검정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에 대한 경비업체, 경비원, 자격증 발급현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검정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한 분석보다는 자격제도를 주제로 한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 경비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정제도를 소개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법·제도적 도입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단계,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다다르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여주었으나, ‘경비원 검정제도’라는 세부 연구대상과 주제, ‘일본’이라는 비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서 본 연구는 한국 경비원 검정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단계와 절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무의 고질적인 문제와 전문성 향상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적, 제도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민간경비 자격검정제도에 대해 검정범위, 교육과목, 검정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적 민간경비원자격검정제도 도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II.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이론적 논의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등록자격, 공인자격의 구분

을 두어 자격제도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의 전반적 규제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경비업법 상에서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검정제도는 없으나, 동법 제18조 제7항에 따라 신입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 규정하는 유일한 검정제도는 제11조에 따라 ‘경비지도사 시험’을 합격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4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비지도사 제도가 있다.

이러한 자격제도를 근간으로 과거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민간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져 왔다.

특히 직접적으로 민간경비의 자격검정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국내 민간경비 자격제도 비교(안황권, 2006; 박준석·홍준혁, 2006)와 외국 민간경비원의 자격증제도 비교연구(조용철, 2007; 조용철·김순석, 2008; 최정택, 2009; 박장규·김남중, 2013)로 구분하여 경비원의 교육훈련과 경비지도사의 자격제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Ⅲ.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

1. 배경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는 일본 「경비업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후인 1982년 1차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당시 일본 의회의 ‘제96회 국회 본회의 제15호 회의록’에 따르면, 1982년 3,210개의 경비업체에서 일어난 위반 건수는 1,513건으로, 이 중 362건이 경비원에 의해 일어난 범죄였으며, 1/4에 해당하는 86건이 흉악·폭력범죄에 해당할 만큼 불법 경비업체와 경비원에 의한 범죄가 매우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었다(第096回国会).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불법 경비업체를 배제하고, 경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을 골자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본 경찰청은 경비원에 의한 범죄의 원인을 ‘경비 업체의 지도 교육체제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나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지도·교육 의무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경비원의 교육의 내실 강화를 위해 ‘지도교육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경비 업무 실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비원의 지식 및 능력을 향상 및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당시 20시간의 경비원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경비원의 지식 및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검정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경비원 검정제도

경비 업무 검정은 개정 전 「경비업법」 제11조 및 1986년 7월 1일 국가 공안위원회 규칙 제5호 「경비원 등의 검정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경비 업무와 관련한 일정 이상의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한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초 경비원에 대한 검정은 교통유도경비, 귀중품운반경비업무, 공항보안경비업무,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 운반 경비업무의 4종에 대한 검정이 이루어졌으며,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1998년 상주경비업무(현재 시설경비업무)를 추가하고, 2005년 11월 21일에 시행된 개정 「경비업법」 및 2005년 11월 18일 개정된 국가 공안위원회 규칙 「경비원 등의 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 현재 교통유도경비, 귀중품운반경비, 공항보안경비, 시설경비,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 운반경비, 혼잡경비의 6종류에 대한 민간 경비 자격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검정 현황

〈표 1〉 자격증 소유자 수(2018년 12월 말 기준)

검정 구분	공항	시설	혼잡	교통	핵연료물질 운반 등	귀중품 운반	계
1급	3,363	8,881	5,776	5,568	276	3,852	27,716
2급	4,701	44,783	25,357	70,694	1,369	21,708	168,612
계	8,064	53,664	31,133	76,262	1,645	25,560	196,328

※ 출처: 일본경찰청 생활안전국 통계자료
(<http://www.npa.go.jp/bureau/safetylife/index.html>)

일본 경찰청 생활안전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자격증 소유자는 총 196,328명으로, 1급 27,716명, 2급 168,61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검정 구분별로 보면 교통, 시설, 혼잡, 귀중품운반, 공항, 핵연료물질 운반 등 경비 업무 순으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552,405명의 총 경비원 중 약 35.5%의 경비

원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검정의 종류

〈표 2〉 경비 업무 검정의 종류

종류·등급			취득 요건	취득 방법	
종류	시설경비업무	등급	1급	2급 합격 후 해당 경비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의 현직 경비원	1.公安위원회가 직접 검정
	교통유도경비업무				
	혼잡경비업무		2급	없음	2. 특별 강습 지정 기관에 의한 특별 강습 수수료
	귀중품운반경비업무				
	핵연료수송경비업무				

※ 출처 : 경비원 등의 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 및 연구자가 재구성

검정은 1급과 2급이 있으며(규칙 제4조), 2급 시험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2급 검정에 합격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격증의 발급이 교부되지 않으며, 1급에 응시할 경우 2급 합격 이후 1년 이상 해당 경비 업무의 실무 경험 또는公安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규칙 제8조).

3) 검정의 절차 및 평가과목

일본 경비원의 검정제도는 도도부 현公安위원회(경찰)가 실시하는 필기/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자격증(합격증명서)을 취득하는 ‘직접검정’과(법 제23조 제2항), 국가公安위원회에서 인정한 등록강습기관인 전국 경비업협회, 경비원 특별 강습 사업 센터, 항공보안 경비교육 시스템에서 강습회를 시행하고 있다. 자격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과정을 수료하여 수수료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강습회 수료’의 2가지 과정이 있다(법 제23조 제3항, 규칙 제5조).

범법행위, 규정위반, 명령위반, 부정등록 등 결격사유 해당 시에는 강습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규칙 제35조), 직접검정의 경우 특별강습보다 합격률이 낮아 경비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을 경우 시험만으로 합격하기에는 다소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1) 직접검정

公安위원회는 당해 검정의 실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검정에 관한 필기, 실기시험

일시 및 경비업무의 종류, 급을 기재하고 응시절차와 기타 검정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공시한다(규칙 제7조).

검정 일정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비원은 그 주소지 또는 그 사람이 경비원 인 경우에 신청자가 속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규칙 제9조). 신청서 제출 후에는 수험표를 교부받고(규칙 제10조), 검정장소와 일시에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

1급, 2급 검정의 필기 및 실기시험 과목 및 판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규칙 제6조 관련 별표1·2, 제18조)

〈표 3〉 경비원 검정시험의 과목별 판정기준

시험 구분	과목	판정 기준
학과 시험	경비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경비원의 자질 향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법령에 관한 일	경비업법, 기타 경비 업무의 실시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신의 법령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경비 업무의 실시에 관한 일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최신의 각종 기자재의 기능,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경비 업무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에 관한 일	경비업무, 호신 방법, 응급조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실기 시험	경비 업무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에 관한 일	경비업무, 호신 방법, 응급조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

※ 출처 : 경비원 등의 검정에 관한 규칙 제18조 참조, 연구자가 재구성

검정과목의 경우 경비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은 각각 검정종별로 학과시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경비 업무의 실시에 관한 일과 경비 업무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에 관한 일 등에 관한 필기·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공항경비는 금속 탐지기, X선 투시장치 기타 수하물 등 검사에 사용되는 기계의 구조, 작동원리 및 기능, 수화물 등 검사용 기구의 조작, 조정, 고장 및 원인과 대책, 항공관련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고 그것이 기내에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경찰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설경비는 인원 및 차량 등의 출입관리 방법,

순찰, 휴대용 무선장비, 금속탐지기, 침입탐지장치, 원격감시장치와 기타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기기조작, 시설경비업무 장비의 고장 또는 오류 시 취해야 할 조치, 수상한 사람이나 물건을 발견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사고발생시 부상자의 구호 및 경비업무 대상시설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호신도구의 사용방법 및 기타 호신술, 기타 사고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혼잡경비의 경우 혼잡경비업무용 기자재 사용방법, 사고발생시 경찰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고발생시 부상자의 구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유도 및 기타 혼잡정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 운반경비업무의 경우 방사선 측정용 기계의 구조, 기능, 운영 방법 및 관리 방법, 로프, 소화기, 기타 사고발생시 방사선 장애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자재의 기능,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 차량의 점검 및 수리, 주변감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귀중품운반경비업무는 업무용 차량장비 및 조작 방법, 고장 원인과 대책, 주변감시, 운반 중 업무담당자 등과 연락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과목들로 구성된다.

공항보안업무, 핵연료 물질 등 위험물운반경비업무의 경우 다른 경비업무와는 달리 산업·업무의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지식과 이해에 대한 과목이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1급의 경우 중별로 ‘업무의 관리에 관한 알’을 포함하여 필기·실기시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급보다 전문성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하여 경비업무 대상의 범위, 시설구조, 교통상황, 주변환경 등 기타 경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능률적이고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업무와 사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과 시험은 택일 식의 필기시험으로 감점식 평가방법에 의해 90%이상의 성적이 합격기준이며, 실기시험 또한 합격기준이 같다. 직접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며(규칙 제11조), 자격증명서 신청과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표장의 사용이 가능하다(규칙 제16조).

(2) 강습회

강습회는 일명 ‘특별강습’이라 불리우는 것으로,公安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직접검

정 이외에 민간경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기준 또한 「경비원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통하여 검정 급마다 학과, 실기강습 및 시험을 실시한다.

강습시간의 경우 급수, 종별 경비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공항보안경비업무가 20교시, 시설, 혼잡, 교통유도, 핵연료물질 등, 귀중품 운반경비업무의 경우 12교시로 시간별 강습료에 차이가 있다.

「경비업법」 제26조에 따라 강습회를 실시하는 경우 경비 업무에 관한 법령 과목은 ① 대학에서 행정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또는 부교수의 직에 있거나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 ② 경비원 지도교육책임자자격증의 교부를 받은 자로 경비원지도 및 교육업무에 통산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②항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 업무의 실시 방법,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은 앞서 명시된 ②, ③항의 조건을 갖춘 전문강사가 실시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습회의 과목은 법령에 관한 일과 경비업무의 실시에 관한 일, 그리고 해당 경비 업무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 조치에 관한 일로 세부적으로는 직접검정과 동일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실시되며, 강습회를 수강하고 수료고사에 합격한 경우 ‘강습회 수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규칙 제17조 제3호).

강습회 수료 증명서는 직접검정의 성적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되며,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다.

IV. 일본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시사점과 한국 민간경비 전문화 방안

앞서 기술한 일본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민간경비 전문화 방안으로써 검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법적 근거에 따른 민간경비원 검정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업법에서 명시된 경비원 검정과 관련한 조항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6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명확한 경비업무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

먼저 경비업무 분야와 범위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의 경우 4호업무(신변보호)를 제외한 1호, 2호, 3호 업무의 검정제도를 통해 분야별 특화된 산업이나 업종과 관련된 관계법령이나 경비업무 필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1호에서 4호의 경비업무를 단순히 호에 의해 구분된 검정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각 호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경비활동에 의한 검정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비원 검정제도 도입을 위해 경비업법의 경비업무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경비대상에 따라 5종류의 경비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방지업무를 실시하는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활동인 특수경비와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고정된 시설과 시설내부에서 실시하는 경비활동의 특성으로 건물에 출입하는 인원의 출입관리, 순찰, 방재활동이라는 특성과 외부에서 많은 군중들의 출입과 행사준비 중 발생할 수 있는 혼잡·사건사고의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비업무로 취급하고 있어 경비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의 경비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하고, 명확한 범위설정을 통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설경비, 행사장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로 경비업무를 구분하고, 시설경비 내에 일반시설경비, 특수시설경비를 하위 경비업무분야로, 행사장경비라는 새로운 경비업무 분야를 추가하고, 문화·체육 행사장경비, 세미나·강연·주주총회경비, 노사분규현장경비 등 분야별 세부분야로 구분하여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비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고 분야별 세부 자격증의 도입을 통하여 경비업무의 전문화 과정을 이루어야 한다.

2. 수준에 따른 민간경비 검정자격의 구분

다음으로 일본은 수준에 따른 민간경비 검정자격의 구분을 통해 1급과 2급으로 민간경비의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이는 단순히 경비원에 대한 자격평가를 넘어 경비원이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객관적으로 민간경비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

다. 또한 전문화 단계를 거쳐 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상위단계를 민간경비 검정제도의 급수로 구분하여 수준에 따른 평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경비원을 단순한 업무수행자가 아닌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현장의 관리감독자, 강습기관의 강사, 관련업무의 안전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정제도 도입 이후 2005년 경비업법 개정 후에는 검정 경비원에 대한 특수 안전분야에 경비원 의무배치를 상설화시키는 등 정책적 활용과 관련분야의 자격기준 책정 등의 근거와 직급, 경력의 기준과 이를 토대로 한 적정임금의 책정 등 민간경비업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도 경비원 검정제도 도입 시 수준에 따른 급수 또는 구분화된 자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비업무의 경력과 경험, 지식에 따른 전문성을 평가하는 민간경비원 검정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비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임금, 사회적 인식, 최저임찰 등의 문제들에 대한 법·정책적인 해결방안의 객관적 지표와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한 복합적 평가방법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한 복합적 평가방법은 학문적·지식적인 측면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여 실제 경비업무 현장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에게는 현장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경비업무를 실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 실제 경비업무현장을 체험·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식과 응용의 측면에서 경비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진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업무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황부여를 통해 실기평가를 실시하여 우발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와 경비원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평가방법으로 활용된다.

국내 경비관련 자격증인 경비지도사의 경우 실기평가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험방법을 통해 민간경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경비관련업무의 지도·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문제점과 합격 이후 기본교육

이수를 통한 자격증 발급이 시큐리티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과 경비원 검정제도 도입 시에는 앞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복합적 평가방법을 병행하고 근무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목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4. 학과-실기과목의 연계성

학과-실기과목의 연계성을 통해 실제 경비업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비업무현장에 투입될 경우 높은 교육효과와 업무활용, 적응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전국경비업협회에서 발간한 경비원 교육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의 과목에 대한 사례와 실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강습회도 동일한 과목으로 학과과목에 대한 실기업무에 대한 내용을 따로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경비업법에 경비원 교육과목과 시간이 편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론과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실시되며, 학과과목과 실기과목이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어 학과-실기과목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 자격검정이 연계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조용철, 2007:149).

따라서 국내 경비원 교육과정에서 학과과목과 실기과목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목 시간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계법령과 기초지식에 대한 부분은 학과과목으로 유지하되, 업무수행과 관련한 과목은 학과-실기를 병행한 교육과목 또는 시간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5.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

공안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직접검정과 등록강습기관을 통한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외에 등록강습기관의 특별강습을 통해 경비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와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민간경비 자격을 필요

로 하는 취득희망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수익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생-교육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구조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 또한 시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격취득방법은 자격검정기관에 의한 등록을 통해 실시하는 단일화된 취득과정을 채택하고 있어 자격취득희망자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력자, 종사자에 대한 접근성 확보의 부족,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교육과 수료기회의 부재 등 ‘개인’으로써 교육과 시험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비 자격검정제도 도입 시 자격취득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력자, 종사자의 참여와 취득희망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강습기관에 대한 전문강사 확보와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교육산업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6. 검정합격자에 대한 혜택

마지막으로 검정합격자에 대하여 자격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장과 해당 경비업무에 따른 경비원 의무배치의 자격, 그리고 등록강습기관의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등 민간경비업무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의무배치제도를 통하여 1급 또는 2급 검정합격 경비원의 의무배치를 상설화함으로써 해당업무의 전문성과 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자격의 경비업무와 이외의 경비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법정교육인 신입교육과 현업교육의 면제 또는 일부 면제혜택을 받아 업무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다. 이처럼 검정합격자에 대한 혜택을 통해 경비원의 전문활동을 인정하고 경비업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경비원으로서의 혜택이 전무한 현 시점에서, 검정제도 도입 시 검정합격 경비원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하고 체계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검정제도와 관련하여 경비지도사와 경비관련직종의 경력자에 대한 신입교육 면

제혜택이 있으나, 실제 현장업무와 관련한 교육의 부재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사실상 자격취득을 통한 경비업체의 경비지도사 선임, 집단민원현장 배치를 제외하고 별 다른 혜택사항이나 활용 등의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 검정제도 도입 후 합격한 경비원에 한하여 가시적으로 합격자에 대한 표창이나 경비현장 배치 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할 인원으로 배치기준을 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경호경비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활용하여 대학 교육과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수한 졸업생들에 대한 자격심사 제도를 활용한 자격 부여를 고려하여야 한다(박동균·박기범, 2012:117)

V. 결 론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공급과 효과적 예방을 위한 민간영역의 활용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경비원은 낮은 처우와 임금, 사회적 인식, 최저임찰제 등 사회적, 구조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어 경비산업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한국의 경비원 검정제도 도입을 위해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확히 구분된 경비업무의 분야와 범위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경비대상과 특성에 따라 1호~4호 경비업무의 구분을 통해 세부업무를 구분하여 경비업무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초 경비업법 제정 이후 각각의 경비업에 대한 추가만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경비업무의 검정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업무별 특성에 따른 명확한 경비업무의 구분과 범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수준에 따른 민간경비 검정자격의 구분이 필요하다.

일본은 1급, 2급으로 구분하여 경비원의 수준에 따른 등급별 경비원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

간경비업무가 객관적 검증을 통한 전문영역으로써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직급과 경력, 임금 등 다양한 객관적 지표로써의 활용과 전문업무를 인정받아 특정 경비업무에 자격증을 갖고있는 자에 한하여 의무배치를 실시하도록 상설화 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으로써 활용의 가치를 보다 높게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도 검정자격에 등급을 두어 민간경비의 영역을 전문화하고 객관적 지표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한 복합적 평가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경비지도사 제도의 경우 필기시험과 신입교육을 통해 현장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경력이 없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민간경비원 검정제도 도입 시에는 평가를 통한 현장체험과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적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과-실기과목의 연계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기본지식, 관련법령을 제외하고는 학과과목과 실기과목을 동일하게 편성하여 실제 업무와의 지식-실무관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우발상황이나 실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적응도를 매우 효과적으로 교육,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비취 볼 때 검정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한국의 경비원 신입교육과목에 대한 이론-실무과목의 연계와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를 두어 자격취득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공안위원회와 등록강습기관의 특별강습을 통해 자격취득 희망자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시험응시 이외에도 교육기관의 등록을 통한 수료를 통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강사를 확보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강습기관의 수익성과 지속성 또한 보완하고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신입교육만을 전담하여 교육체계 미흡의 문제, 수익성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전문강사의 활용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집중교육의 커리큘럼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격취득희망자에게 전문교육의 기회와 접근성 확보와 더불어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순환적 기반을 위해서도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정합격자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고 표장, बै지 등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가지적으로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6가지의 시사점에 대하여 한국 민간경비 검정제도의 도입 시 민간경비업 구분의 불명확함, 교육훈련체계 미비로 인한 검정을 위한 과목구성과 체계 부족, 검정과목과 업무관련성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전문화된 안전전문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고객의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비업은 업무범위, 교육, 관리, 감독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단발적 연구보다 복합적 연구가 필요하며, 민간경비원 검정제도 이외에도 경비업무의 명확화·구체화를 통한 경비업 개정, 직무연구를 통한 현장-직무연계 교육훈련과목 도출, 관리감독기관의 역할 및 변화, 경비관련 전문인력 활용 등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통해 하나의 전문분야로의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동균, 박기범 (2012).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2), 97-128.
- 박성수 (2017). 민간경비교육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6(3), 105-132.
- 박장규, 김남중 (2013). 한국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13(5), 117-127.
- 박준석, 홍준혁 (2006). 민간경호·경비 관련 전문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7, 121-162
- 박형식 (2014). 경비원의 직무교육과 경비지도사의 역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2), 107-127.
- 안황권 (2006). 민간경비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1, 159-181
- 조상현 (2015). 민간경비 교육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비교법학**, 26, 95-121.
- 조용철 (2007). 외국 민간경비원의 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 133-152.
- 조용철, 김순석 (2008). 일본 민간경비원의 자격 및 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16, 1-18.
- 최정택 (2009). 민간경비 자격검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8, 143-167.
- 警備業法(昭和四十七年法律第百十七号)
警備業法施行規則(昭和五十八年總理府令第一号)
警備員檢定等に関する規則(平成十七年国家公安委員会規則第二十号), 平成三十一年三月二十九日公布 (平成三十一年国家公安委員会規則第四号) 改正
第096回国会 地方行政委員会 第15号 昭和五十七年四月二十二日 (木曜日)
- 일본경찰청 생활안전국 통계자료(<http://www.npa.go.jp/bureau/safetylife/index.html>, 2019년 4월 29일 검색)
- 경비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2호, 2019. 4. 23. 일부개정]
- 경비업법[법률 제16316호, 2019. 4. 16. 일부개정]
- 자격기본법[법률 제14397호, 2016. 12. 20. 일부개정]

【Abstract】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through the Japanese Privat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Lee Chi Young

As the dem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afety is gradually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the times and social environment, and the use of private areas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supply required for the demand for safety services, this paper analyzed the Japanese private security testing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as a way to secure expertise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certificate segmentation should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learly divided field and scope of the expense oper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qualific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qualification according to the level.

Third,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combined evaluation method through the departmental and practical tests.

Fourth, an assessment should be made through the link between departments and practical subjects.

Fifth, the diversity of the acquisition methods should be placed to ensure the gainer's accessibility.

Finally, the use of professional and visible use of professional personnel should be achieved through benefit assessment for those who are qualified for

Keywords: Japanese private security, Privat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Private security certificate, Security guard certificate